

건설기술진흥법 교육·훈련 개정사항 안내

□ 건설기술진흥법 교육·훈련(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계속교육)개정사항

구분		기존	개정		시행시기 (개정시기)
			교육시간	교육내용 편성 및 운영*	
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	일반	(초·중급) 35시간 (고·특급) 70시간	(초·중급) 14시간 (고·특급) 49시간	· 스마트건설기술(5h) · BIM과정(3h)포함	24.1.7. 시행 (23.1.6. 개정)
	필수 (신설)	-	매년 7시간 (3년 21시간)	· 시방서(2h)+사고사례(2h) · 교육기관자율편성(3h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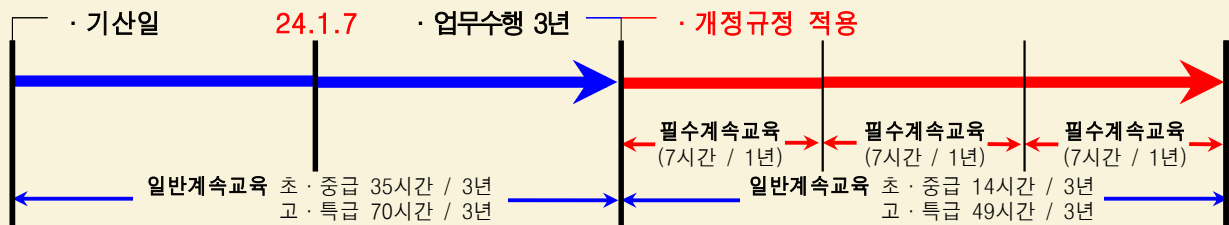
* 교육내용 편성 및 운영은 현재 고시개정 중

□ 개정사항 적용 예시

사례 1

업무수행 3년되는 날이 24.1.7. 이후인 계속교육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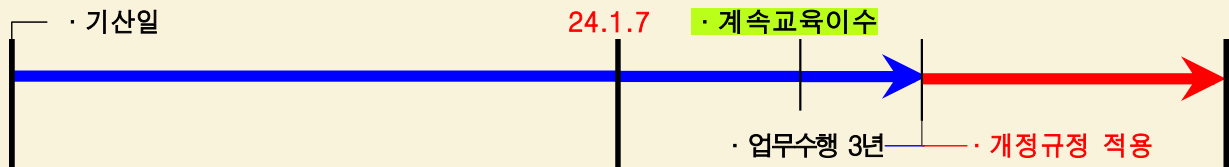
☞ 기존규정 유지 후, 새로 발생하는 계속교육부터 개정규정 적용



사례 2

업무수행 3년되는 날이 24.1.7. 이후이며, 24.1.7. 이후 계속교육을 받은 경우 :

☞ 업무수행 3년되는 날까지 기존규정 유지 후, 새로 발생하는 계속교육부터 개정규정 적용



사례 3

업무수행 3년되는 날이 24.1.7. 이후이며, 24.1.7. 이전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:

☞ 승급교육 이수일 후 새로 발생하는 계속교육에 기존규정 적용 후, 새로 발생하는 계속교육부터 개정규정 적용



사례 4

업무수행 3년되는 날이 24.1.7. 이후이며, 24.1.7.이후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:

☞ 승급교육 이수일 후 새로 발생하는 계속교육에 개정규정 적용



☐ 계속교육 이수현황 조회 화면 보기

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용 홈페이지

[회원님!](#) | [로그아웃](#) | [마이존\(MyZone\)](#)

전체메뉴
 경력조회
 교육훈련
 계속교육 이수현황

계속교육 이수현황 조회

교육훈련 이수현황 조회
최초교육 이수현황 조회
계속교육 이수현황 조회
현재등급 및 승급교육후 등급조회

● 계속교육 조회

☐ 설계시공 특급기술인
 ☒ 건설사업관리
 ☐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
 ☐ 품질관리
 검색

●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

업무 수행기간 산정 기준
 -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통보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을 산정
 (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>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>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제도 >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·시간·이수시기 계속교육 참조)

차수	기산일 ¹⁾	수행일 ²⁾	3년되는 날 ³⁾	이수/교육종류	교육시간	연기일
				이수일	이수시간	접수일
2	21.2.1.	1,095	24년 1월 31일	이수/계속교육	70	-
				23.12.31	70	-
3	24.2.1.	30	27년 1월 31일	-	70	-
				-	-	-

변경 후

□ 개정 법령 시행일(24.1.7.) 이전 발생한 계속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계속교육으로 표기

차수	기산일 ¹⁾	수행일 ²⁾	3년되는 날 ³⁾	이수/교육종류	교육시간	연기일
				이수일	이수시간	접수일
2	21.2.1.	1,095	24년 1월 31일	이수/계속교육	70	-
				23.12.31	70	-

□ 개정 법령 시행일(24.1.7.) 이후 발생한 계속교육은 일반·필수계속교육으로 구분하여 표기

차수	기산일 ¹⁾	수행일 ²⁾	3년되는 날 ³⁾	이수/교육종류	교육시간	연기일
				이수일	이수시간	접수일
3(일반)	24.2.1.	30	27년 1월 31일(예상)	-	49	-
				-	-	-
차수	기산일 ¹⁾	수행일 ²⁾	1년되는 날 ³⁾	이수/교육종류	교육시간	연기일
				이수일	이수시간	접수일
3-1(필수)	24.2.1.	30	25년 1월 31일(예상)	-	7	-
				-	-	-
3-2(필수)	25.2.1.	-	26년 1월 31일(예상)	-	7	-
				-	-	-
3-3(필수)	26.2.1.	-	27년 1월 31일(예상)	-	7	-
				-	-	-

1) 기산일 : 해당 차수 시작일

2) 수행일 : 기산일로부터 해당 차수 내 업무수행일*

*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(CEMS)으로부터 최종통보된 경력까지 반영

3) 3년·1년되는 날 : 기산일을 기준으로 해당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예상한 날짜(단, 업무수행이 없는 기간은 제외)

* CEMS로부터 추가 또는 정정 통보되는 건설사업관리 경력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24년 1월 7일부터 조회 가능